

COVID-19 관련 재정난 신고서

민사소송법 제 1179.02(d)

본인은 현재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임대 비용이나 기타 금융 의무사항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.

1.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.
2. COVID-19 대유행 기간 중 필수 업무 수행 관련 직접 지출 비용의 증가.
3. COVID-19 대유행에 직접 관련된 건강 지출비용 증가.
4. COVID-19 대유행으로 발생한 어린이나 노인, 장애인 돌봄이 본인의 근로 수입을 제한함.
5. COVID-19 대유행에 직접 관련된 어린이나 노인, 장애인, 환자 가족 돌봄 비용 증가.
6. 기타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혹은 지출 비용 증가.

COVID-19 대유행 이후 수령한 공공 지원 실업자 보험, 실업자 지원, 주 상해 보험(SDI), 유급 육아/가족 휴가 지원이 소득 손실 및 지출 증가를 모두 보상하지 못함.

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서명합니다.

서명

날짜

더 많은 법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<https://lawhelpca.org/>를 방문하세요.

정보 및 리소스,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www.LandlordTenant.dre.ca.gov를 방문하세요.

COVID-19 관련 재정난 공문 전달

민사소송법 제 1179.03(f)

민사소송법 1179.03(f)에 의거, 세입자는 본 COVID-19 관련 재정난 공문을 아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.

- (1) 직접 전달: 임대인이 고지에 신고서를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한 경우
- (2) 전자 메일 전달: 임대인이 메일 주소를 기재한 경우
- (3) 미국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발송: 임대인이 (1)항에 따른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, 세입자가 임대인이 제공한 주소로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제공한 주소로 세입자가 신고서를 부치는 즉시 본 신고서는 해당 일자에 임대인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(4)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: 해당 수단으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